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132
----------	-----

제출년월일 : 1997. 8. 23.
제 출 자 : 박정호의원외6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가 구정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대상

- 구청장
- 부구청장
- 기획실장
- 총무국장
- 보건소장
- 재무국장
- 시민생활국장
- 도시정비국장
- 건설국장

나. 출석일자 : '97. 9. 4.(목) ~ 9. 5.(금)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